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35호

2024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특화분야 운영기업 모집·등록 공고

대·중견·중소·공기업의 내·외부 자원을 활용한 사내벤처팀 발굴 및 분사창업기업으로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특화분야 운영기업 모집・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중견·중소·공기업의 기술인력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친화적 환경 및 개방형 창업생태계 조성

□ 사업내용

○ 운영기업에서 발굴하여 추천한 사내벤처팀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사내벤처팀의 분사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운영기업의 역할

• **(운영기업)** 개방형 혁신을 위해 사내벤처팀을 발굴하여 사업화 및 분사창업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지원제도, 인력 및 재원을 보유한 대·중견·중소·공기업

• **(주요역할)** ① 운영기업 내부에서 사내벤처팀 발굴·선정
② 전담기관(창업진흥원)에 사내벤처팀 추천
③ 사내벤처팀 정부지원금에 대한 대응자금(현금·현물) 매칭 지원
④ 사내벤처팀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⑤ 사내벤처팀의 분사창업지원 및 후속관리

2. 운영기업 등록요건

□ 등록대상

○ 운영기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대·중견·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

* 대기업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는 대규모기업집단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등록요건

○ 사내벤처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내벤처 운영규정' 보유

- 사내벤처팀의 분사창업지원을 위한 소속 임직원의 인사·급여·복무·보상, 추진체계 및 절차 등에 대한 내부규정

< **운영규정 구성(안)** >

① 총칙	② 신청·평가	③ 운영·관리	④ 보상·투자	⑤ 기타사항
• 목적 •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 추진체계	• 모집방법 • 모집안내 • 신청자격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지원내용 • 경영자율권 • 고용안정(창업 휴직 및 복직) • 점검 및 평가 • 사업비 정산	• 성과보상 • 분사창업 • 지분투자	• 비밀유지 • 분사방해금지 • 기타 필요사항

○ 사내벤처팀 지원을 위한 최소 재원 확보

< **운영기업 유형별 최소 재원** >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금액	70백만원	50백만원	30백만원	50백만원

* 사내벤처팀 정부지원금(최대 1억원)에 대한 대응자금을 운영기업에서 납부

○ 사내벤처팀 발굴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자 2인 이상 배정

- 운영기업 내부에서 사내벤처팀 모집 및 선정, 분사창업을 지원하고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협력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로 겸직 가능

○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기업

□ 등록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3. 등록절차 및 방법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누리집 (www.k-startup.go.kr) 에서 온라인 신청

□ 등록절차

○ 창업진흥원에서 사내벤처팀 모집 시기(2월 예정)에 맞추어 등록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하고 등록증 교부

신청서 접수		등록 요건검토		운영기업 등록완료
운영기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 제출	➡	운영기업 제출 서류 및 등록요건 검토	➡	운영기업 등록증 교부
신청기업 →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 신청기업
연중 상시		'24년 ~2월		~'24년 2월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1	운영기업 등록신청서 * 양식1 활용
2	운영기업 사업계획서 * 양식2 활용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4	사내벤처 운영 규정 * 사내벤처팀의 독립성 보장 등 운영기업 의무사항을 규정 내 필수 포함
5	사내벤처팀 지원 재원 증빙 * 계좌잔고증명서(은행발급용), 재원확보확약서, 재원확보계획서 중 택1
6	사내벤처팀 지원 담당자 배정 증빙 * 조직도 및 업무분장, 담당자별 재직증명서 등
7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양식3 활용, 대표자가 직접 K-스타트업에 가입,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양식4 활용

4. 지원내용

□ 운영기업 지원내용

○ 사내벤처팀 추천 권한 부여

- 운영기업이 발굴·육성한 사내벤처팀을 창업진흥원에 추천

< 사내벤처팀 추천 개요 >

- 추천대상 : 사내벤처팀(예비창업자)
- 추천요건 : ① 사내벤처팀장이 운영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
  ② 사내벤처팀장 명의의 사업체 미보유 * 요건 기준일자 : 사내벤처팀 모집공고일 기준
- 추천시기 : 연 1회 ('24년 2월 예정)

○ 사내벤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운영기업 내 사내벤처 문화조성을 위한 특강 등 지원

  * 관련 프로그램은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운영기업 워크숍을 통해 담당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사내벤처 활성화 유공 포상

- 사내벤처 문화조성 및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우수 운영기업 담당자를 포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대상자로 추천

□ 운영기업이 추천하여 선정된 사내벤처팀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지원

-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활동 등에 활용 가능

  * 대응자금 : 운영기업 유형에 따라 대응자금 상이('참고2' 사내벤처팀 사업비 구성(안))

  ** 납부주체 및 시기 : 최종 선정된 사내벤처팀과 전담(창업진흥원)·주관기관 간 협약체결 과정에서 운영기업이 납부하고 기한 내 납부되지 않는 경우 사내벤처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

- 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IR, 네트워킹 등 사내벤처팀의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5. 운영기업 의무사항

□ 운영기업은 '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 및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세부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사내벤처팀을 지원하여야 함

□ 운영기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정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운영기업은 사내벤처팀 지원과정에서 취득한 창업 아이템, 기술 등의 정보를 갈취하거나 사내벤처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운영기업은 선정된 사내벤처팀을 별도 조직으로 발령 조치하고 별도의 사무공간 제공, 사업비 관리권한 부여 등 사내벤처팀의 사업화 활동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여야 함

□ 운영기업은 사내벤처팀의 분사창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내벤처팀의 창업 실패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여야 함

○ 사내벤처팀이 독립분사하는 경우 퇴직 또는 휴직을 지원하며 창업에 실패하는 경우 복직 및 창업활동에 대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또한 사내벤처팀이 복직할 경우 원 소속으로 복귀시키거나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운영기업이 분사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은 30% 미만으로 소유하며 최대출자자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하여야 함

○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사창업기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하여야 함

□ 운영기업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지원부서 또는 담당 실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담기관(창업진흥원)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운영기업은 등록이 완료된 해부터 전담기관(창업진흥원)에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성과 및 차년도 계획을 정기 보고하여야 함

* 정기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등록완료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6.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등록 신청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자가 위임한 사내벤처 지원부서 팀장 등이 신청할 수 있음

*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필수 제출

□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이 신청하는 경우 CVC가 소속된 기업집단 회사에서 발굴한 사내벤처팀을 총괄하여 추천할 수 있음

□ 운영기업은 대표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이 포함된 사내벤처팀을 전담기관(창업진흥원)에 추천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전담기관(창업진흥원)은 사내벤처팀 점검과정에서 운영기업의 역할 수행 및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익편취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기업을 점검하고 등록 취소, 지원금 환수 등으로 제재조치할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운영기업이 법규 또는 본 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등록신청서 등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등록자격 및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기업 등록 취소 등이 조치될 수 있음

7.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044-410-1768, 1767 / openinno@kised.or.kr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기업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창업진흥원 메일(openinno@kised.or.kr)로 아래내용을 작성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명 / 성함 / 소속부서 및 직함 / 연락처 / 기업 소재지 / 상담 희망내용]

□ K-스타트업 시스템 사용관련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양식 1 **운영기업 등록신청서**

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특화분야) 운영기업 등록신청서

기 업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 립 년 월 일			주 소	*본사 소재지 기재*	
기 업 구 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공기업				
사 내 벤 처 운 영 규 정	제정일자	*'00.00.00.*	기 업 형 태	□ 법인	□ 개인
	개정일자	*최근 개정일*			
대 표 자	성 명		이 메 일 주 소		
	직 위				
실 무 담 당 자	성 명		휴 대 전 화 번 호		
	직 위		이 메 일 주 소		
실 무 담 당 자	성 명		휴 대 전 화 번 호		
	직 위		이 메 일 주 소		
기 업 개 요	*운영기업(신청기업)의 주요 사업내용(기술분야, 업종, 판매제품 등)*				
담 당 부 서	부 서 명		부 서 인 원		
사 내 벤 처 팀 지 원 개 요	지 원 분 야	*모집·발굴하는 사내벤처팀의 기술분야*			
	지 원 사 항	*사내벤처팀에 대한 주요 지원사항(무상기술이전, 초기자금 투자 등)*			
	추 천 규 모	*추천 가능한 사내벤처팀 수('24.3월 0개팀)*			

매 출 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액 기준)*	2021년	2022년	2023년
	억원	억원	*(매출 신고금액 기준)*억원
근 로 자 수 *(연도말 4대보험 가입자 기준)*	**2021년**	**2022년**	**2023년**
	명	명	명

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특화분야) 운영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향후 등록 취소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3. 사내벤처 운영규정
4. 사내벤처팀 지원 재원 증빙
5. 사내벤처팀 지원 담당자 배정 증빙
6.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실무 담당자가 2명을 초과할 경우 표를 추가하여 해당정보 필히 기재

양식 2 운영기업 사업계획서 목차

□ 운영기업 개요

○ 운영기업 주요 사업내용, 지원부서 및 부서 주요업무, 사내벤처팀 지원업무 담당자 배정현황 등

○ 사내벤처팀 지원 프로그램 운영 목적, 기대효과, 그간 사내벤처팀 발굴 및 지원실적 등

* 사내벤처팀 발굴 및 지원실적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사내벤처팀 모집 및 발굴 등 선정계획

○ 사내벤처팀 모집 대상, 모집 분야, 선정 규모, 평가 방법, 평가 내용, 모집 및 선정 시기 등

*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이 운영기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CVC가 소속된 기업집단 회사 중 사내벤처팀 발굴 및 추천이 가능한 기업을 모두 기재

** 또한 CVC가 소속된 기업집단 회사와의 사내벤처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를 기재

□ 사내벤처팀 지원 및 분사창업 지원 계획

○ 사내벤처팀 지원내용

* 초기자금, 인프라 지원, 지재권 지원, 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 등

○ 사내벤처팀의 분사 결정방법 등 절차, 분사창업 시 지원사항, 분사창업 이후 협력계획 등

□ 대응자금 조달 현황 및 계획

○ 사내벤처팀 발굴·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 추진일정

○ 사내벤처팀의 분사를 지원하는 절차 및 일정 (사내벤처팀 모집 및 선정, 운영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담기관(창업진흥원) 추천, 분사창업 결정 등)

□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활동(해당 시)

○ 외부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협력 등

양식 3 **위임장**

위임장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부서	
	직책	

2024년 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특화분야) 운영기업 신청, 사내벤처팀 추천 등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반사항에 대한 권한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

창업진흥원 귀하

* 법인인감증명서 별첨

양식 4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창업진흥원은 『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특화분야) 운영기업 등록』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특화분야) 운영기업 등록, 대표자 및 실무 담당자 확인,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 **(수집·이용 항목)** 대표자 및 실무 담당자의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소속, 직위
□ **(보유·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중소벤처기업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전담기관(창업진흥원)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대표자 및 실무 담당자 확인,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업무 진행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표자 및 실무 담당자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소속, 직위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3.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기관명 :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사내벤처 실무 담당자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동의자 서명란을 추가하여 기재

참고1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개요

□ **추진개요** : 대·중견·중소·공기업이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사내벤처팀을 발굴하고 정부가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으로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지원대상** : 운영기업에서 발굴·육성한 사내벤처팀(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주관기관별 성장 지원 프로그램

□ **추진절차**

구분	추진절차	
운영기업 등록	운영기업 등록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업 요건검토·등록	창업진흥원
▼		
사내벤처팀 모집 및 선정	사내벤처팀 모집공고 및 추천안내	창업진흥원 → 운영기업
	사내벤처팀 추천서 제출	운영기업 → 창업진흥원
	사내벤처팀 온라인 사업신청	사내벤처팀
	사내벤처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사내벤처팀
▼		
사업추진	창업아이템의 사업화(시제품 제작 등)	운영기업, 사내벤처팀
	성장 프로그램 지원 및 사내벤처팀 관리	주관기관
▼		
사업종료	최종 점검(성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참고2 사내벤처팀 사업비 구성(안)

(단위 : 원)

운영기업 유형	정부 지원금	운영기업 대응자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대기업	100,000,000	20,010,000	46,690,000	66,700,000	166,700,000
	90,000,000	18,000,000	42,000,000	60,000,000	150,000,000
	80,000,000	16,000,000	37,300,000	53,300,000	133,300,000
	60% 이하	30% 이상	70% 이하	100%	100%
		40% 이상			
중견·공기업	100,000,000	12,860,000	30,000,000	42,860,000	142,860,000
	90,000,000	11,600,000	26,900,000	38,500,000	128,500,000
	80,000,000	10,300,000	24,000,000	34,300,000	114,300,000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100%	100%
		30% 이상			
중소기업	100,000,000	7,500,000	17,500,000	25,000,000	125,000,000
	90,000,000	6,750,000	15,750,000	22,500,000	112,500,000
	80,000,000	6,000,000	14,000,000	20,000,000	100,000,000
	80% 이하	30% 이상	70% 이하	100%	100%
		20% 이상			

* 정부지원금, 대응자금 간 비율에 따라 세부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현물은 사내벤처팀 및 운영기업의 사내벤처 지원부서 소속 인력의 인건비, 운영기업이 사내벤처팀에 지원하는 사무실 임차비 및 보유 기자재 등으로 계상

*** 운영기업 대응자금은 현금으로 100% 구성할 수 있음